
I. 테마진단

◆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시행 과제

조재린 연구위원, 김해식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재보험계약(이하 ‘재보험’이라 함)의 위험전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었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위험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왔음.

○ 현행 감독규정은 출재보험회사가 재보험을 통해 보험위험을 전가하여 재보험회사가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경우 해당 재보험에 대해 보험회계가 허용되나, 위험전가가 제한된 재보험에 대해서는 예치금회계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감독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재보험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험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보험에 보험회계가 적용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행 감독규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감독당국이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와 관련하여 평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무지침으로서 모범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평가하여 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에는 예치금회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9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2012년 10월 「재보험관리 모범기준」이 제시됨.¹⁾

■ 본고는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최근 감독당국이 제시한 보험위험전가의 평가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1)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2. 보험위험의 전가와 재보험 회계처리

가. 재보험 등 위험전가수단에 관한 국제보험감독원칙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재보험 거래에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을 경우 해당 재보험에 보험회계가 아니라 예치금회계를 적용하는 감독기준의 수립을 요구함.²⁾

- 국제보험감독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에 따르면,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재보험 등 위험전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독자는 위험전가기준을 보험회사에 제시하여야 함(ICP 13).
- 세부적으로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재보험 거래와 관련 위험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 이를 통해 감독자는 위험전가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이때, 감독자는 총 보험료에 비해 위험전가의 정도가 제한적인 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위험전가 정도에 걸맞은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함(ICP 13. 2. 7).
- 위험전가가 제한된 재보험은 흔히 금융재보험으로 불리며, 때로는 한정위험재보험, 손실완화재보험, 구조화된 재보험, 비전통재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함(ICP 13. 2. 6).

■ 위험전가 정도에 따라 재보험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데는 위험전가 정도가 낮은 재보험이 위험전가의 특성 이외에 자금조달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서(Culp 2005) 전통적인 재보험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할 경우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실제로 한정위험재보험은 실질적인 위험 경감 효과보다는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고,
- 이는 투자자에게 보험회사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계가 아닌 예치금회계의 적용이 요구됨.

2) ICP 13(재보험 등 위험전가수단).

나. 미국의 사례 : AIG의 재보험 남용과 위험전가평가의 중요성 대두

■ 미국에서도 재보험에 대한 보험회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재무회계와 감독 회계 모두 위험전가 여부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³⁾

- 일반회계기준에 의하면, 재보험 거래를 통해 보험위험이 (1) 실질적으로 전부 또는 (2) 상당한 정도 전가된 재보험 거래에 대해서만 보험회계가 적용될 수 있음.

재보험자(재보험회사)가 원보험자(출재보험회사)로부터

1. “실질적으로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위험의 인수,
또는
2. “상당한 손실”을 입을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⁴⁾ 즉 “상당한” 위험을 인수하는
재보험 거래에 대해서 보험회계가 적용될 수 있음.

■ 위험전가가 상당하면, 출재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모두 재보험료를 손익계산서의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⁵⁾ 상당한 위험전가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재보험을 금전대차거래로 분류하여 보험회계가 아닌 예치금회계를 적용하게 됨.

- 보험회계를 적용하면 출재보험회사는 지급능력평가에서 재보험으로 출재한 규모만큼 준비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보험회사는 해당 재보험료만큼 손익계산서의 수익 증대효과를 얻게 됨.
- 반면, 예치금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모두 재보험료를 손익계산서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재무상태표에 금전대차거래로 반영해야하므로 재보험에서 기대되는 수익 증대와 지급능력 제고 효과는 사라지게 됨.

3) 일반회계기준(SFA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은 출재보험회사에 대해 SFAS 113을, 수재보험회사에 대해서는 SFAS 60(재보험회계)과 SFAS 97(예치금회계)을 적용. 또한 감독회계기준(SSAP: Statement of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and Practices)에서는 SSAP 62가 재보험에 대한 보험회계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SOA(2010).

4) The reinsurer must assume "substantially all" of the underlying insurance risk or "significant" risk; that is, it must be "reasonably possible" that the reinsurer can suffer a "significant loss". CAS(2005).

5) 재보험회계의 재무적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융감독원(2011)의 보험회계해설서 참조.

■ 미국 AIG(재보험자)와 Gen Re(원보험자)의 재보험 거래는 위험전가가 없음에도 보험회계를 적용하여 수익 증대와 주가부양 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재보험 오남용 사례임.⁶⁾

○ AIG와 Gen Re는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손실금이전(loss portfolio transfer)재보험을 체결하였으나, 재보험자인 AIG의 손실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는 계약이었음.

○ Gen Re는 보험가입금액이 6억 달러인 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대가로 5억 달러의 보험료를 AIG에 지급하는 재보험 거래를 체결함.

○ 이때, AIG는 보험료의 2%에 해당하는 1천만 달러를 Gen Re에 재보험수수료로 지급하여 재보험거래의 외형을 갖추고, 해당 보험료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함.

○ 그런데 AIG에 출재된 계약들은 이미 다른 재보험에도 가입된 계약들이어서 AIG가 부담하는 위험은 5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보험가입금액이 6억 달러이므로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에 대한 것이었고, 그 손실 가능성도 희박하여 사실상 AIG가 부담하는 위험은 거의 없는 거래였음.

- 실제로 Gen Re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AIG와의 재보험을 예치금회계로 처리하여 동일 거래를 보험회계로 처리한 AIG와 대조를 이룸.

○ 당시 AIG는 손해보험업 성과의 주요 지표인 지급준비금을 높이려는 의도로 Gen Re와 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을 거래하고 여기에 부당하게 보험회계를 적용한 것임.

- 당시 AIG 주주들은 지급준비금 하락과 영업성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에 AIG 경영진은 역외지역(offshore)의 재보험회사들을 이용한 재보험 거래와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해 AIG의 재무성과를 과장했던 것으로 나타남.

- Gen Re와의 재보험 거래도 그런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0년 전 후에 걸쳐 일어난 AIG의 재보험 거래 조사과정에서 Gen Re와의 재보험에 대한 실체가 2005년에 드러나게 됨.⁷⁾

6)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2011).

7) 2005년 2월 AIG가 일련의 재보험 거래를 통해 지난 5년간 수익이 10% 이상 분식되었고 이를 반영해 다시 작성된 순자산이 27억 달러 감소하면서 AIG의 주가는 30% 하락함. 이로써 미 증권거래소와 뉴욕주 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되어 AIG와 Gen Re는 투자자에 대한 막대한 민사상 합의금(AIG 16억 달러)을 지급하였고, AIG와 Gen Re 관련 임직원 5명은 형사상 기소를 당해 2011년 항소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나온 상태임. Brenza(2008).

■ AIG 사례는 보험감독, 외부감사, 보험전문인(계리사 등)의 모니터링 실패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이에 따라 보험감독과 관련하여 주별 감독의 한계를 지적하고 연방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재보험 관련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
- 직접적인 대응으로는 미국보험감독관협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보험회사의 CEO와 CFO에게 재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⁸⁾ 위험전가의 정량평가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됨.
 - 첫째, 출재보험회사(보고 주체)와 재보험회사 간에 별도의 이면계약 등이 없고,
 - 둘째, 위험전가가 명백하지 않은 모든 재보험에 대해서는 문서화하며,
 - 셋째, 재보험관련 감독회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 마지막으로, 재보험 활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재보험 보험위험전가의 정량 평가

가. 미국 손해보험계리사회(CAS)의 위험전가평가 지침

■ 미국 손해보험계리사회(CAS: Casualty Actuarial Society)는 위험전가 여부를 가리기 위한 3단계 계량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위험전가가 명백하지 않은 재보험에 대해서 정량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 CAS는 재보험의 위험전가 여부에 대해 3단계의 단계별 평가 틀을 제시함.⁹⁾
- 이때, 보험위험의 전가가 명백한 재보험에 대해서는 계량적 평가가 필요 없음.
- 보험위험의 전가가 명백한 경우에도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계량적 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8) NAIC는 2005년 Reinsurance Attestation Supplement를 제정함. Vendetti, P. A. and Freihault, D. W.(2008).

9) CAS(2005).

- 따라서 CAS는 위험전가가 명백한지 여부를 우선으로 평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량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평가지침을 제시함.

(1단계) 모든 위험의 실질적 전가 여부 평가

→ 충족 시 평가 중단. 그러나 1단계 미 충족 시 2단계 평가 수행

(2단계) 위험전가 여부가 합리적으로 자명한지 평가

→ 충족 시 평가 중단. 그러나 2단계 미 충족 시 3단계 평가 수행

(3단계) 권고하는 평가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하여 임계값과 비교

- CAS가 권고하는 위험전가에 대한 정량평가방식은 재보험자의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을 평가하는 것임.

나. 재보험자의 기대손실(ERD) 평가¹⁰⁾

- ERD는 재보험으로 인하여 수재보험자가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을 수재보험자가 받은 재보험료로 나눈 비율임.

-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은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함.

- 이때, 심도의 현재가치(T)는 재보험의 손익이 없는 손익분기점상의 TVaR값임.

$$ERD = p \cdot T / P$$

p =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확률 (즉, 빈도)

T = 손실발생 시의 평균 심도의 현재가치

P = 기대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10) 김소연(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ERD는 위험을 정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하고,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함.
- VaR나 TVaR보다 더 나은 리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1〉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 (예시)

손해액	확률	손실 현가
0	96%	1.0억 원
5억 원	2%	3.8억 원
15억 원	1%	13.4억 원
25억 원	1%	23.0억 원
기대값		0.5

-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가 〈표 1〉과 같고 원수보험사의 50억 이상의 손해에 대해 25억까지 보상하는 재보험을 1억의 보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동 재보험의 ERD는 44%로 계산됨.¹¹⁾
- 손실 발생 확률(p) = $2\% + 1\% + 1\% = 4\%$
- 기대손실 현가(T) = $(3.8 \times 2\% + 13.4 \times 1\% + 23.0 \times 1\%) / 4\% = 11.0$ 억
- 따라서 $ERD = p \cdot T / P = 4\% \times 11.0 / 1.0 = 44\%$

■ 미국에서 ERD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10-10 rule’ 평가기준이 사용되어 왔는데, 심도에 비해 빈도가 현저하게 높거나 심도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10-10 rule’ 기준이 위험전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2005년 CAS는 ERD를 권장함.

- ‘10-10 rule’ 평가기준은 보험료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순손실이 10% 이상의 빈도로 발생할 때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 이는 ERD 1%(= $10\% \times 10\%$)로 환산되는 수준임.
- 그러나 위 예시의 경우와 같이 대형재난을 보상하는 재보험의 경우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ERD가 44%이더라도 ‘10-10 rule’은 보험위험전가가 없다고 평가함.

11) 모든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인 1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할인율은 4%로 가정함. 김소현(2013).

- 일부 비례재보험처럼 심도가 낮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도 ‘10-10 rule’은 보험위험전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국내 재보험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시행과 과제

가. ERD 방식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제도 도입

■ 국내 감독규정은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따라 재보험 또는 예치금(또는 예수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함.¹²⁾

- 즉,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함.
- 이때, 실질적으로 위험이 전가된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으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예치금(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됨.¹³⁾
- 또한,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¹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보험회사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보험위험전가가 거의 없는 재보험계약을 이용한 사례가 있음.

- 과거 일부 원수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재보험자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1년 RBC제도의 시행 이전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보험료, 위험보험금 총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구조여서,
 - 재보험계약을 통한 책임준비금, 보험료, 위험보험금 총액의 감소가 지급여력기준금액에 큰 영향을 미침.
- 원수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재보험으로 회계처리 하여 실질적인 보험위험은 거의 줄이지 않으면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낮춤.

12)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13) 보험업감독규정 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14)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 이는 원수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높임,
- 현재는 2011년 RBC제도의 시행으로 재보험을 이용한 요구자본(과거 지급여력기준금액)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음.
- 리스크 세분화, 보험종목별 보험위험 산출 등의 영향임.

■ 이에 2012년 9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2012년 10월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시됨.

- 2012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조항이 신설되고 동 세칙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이 마련됨.
- 2012년 10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시됨.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의 목적이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¹⁵⁾ 평가 시에는 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의 경우 ERD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정함.¹⁶⁾

-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경우는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 시 부가급부금비율 기준¹⁷⁾을 사용하도록 정함.

1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2-1. (보험위험전가 평가제외 재보험계약).

1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8: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 3.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의 분류).

1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보험계리기준] 2-4. (평가기준) 참조.

나. 보험위험전가의 정량 평가 시행과 과제

■ 재보험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촉진하고 투명한 지급능력평가에 기여할 것이나,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보험회사의 재보험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투명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그러나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위해서는 Data 수집, 모형설정, 모수추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보험위험전가 평가의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전가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서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RD)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⁸⁾고 되어 있어 모든 손해보험 재보험에 대해 ERD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¹⁹⁾

■ 또한, 계량적 수치가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보험위험 전가성이 있는 재보험계약의 경우에도 ERD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IAIS, CAS 등은 재보험거래의 목적 및 계약내용 등 계약의 본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함.

18)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5-5-1.

19) 위험전가가 명백한 재보험계약의 예에 대해서는 유명신(2005) 참조.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재보험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이용하여 재보험을 통한 위험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산분배 등 위험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김소연(2013),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KiRi Weekly 포커스,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2011), 『보험회계해설서』.

_____ (2012),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전문』.

유명신(2005), 『금융재보험 감독관련 국제동향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겨울, 금융감독원.

Brenza, R. (2008), "Insurance Fraud at AIG".

CAS(Casualty Actuarial Society, 2005), "Risk Transfer Testing of Reinsurance Contract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Culp, C. and Heaton, J. B. (2005), "The Uses and Abuses of Finite Risk Reinsurance",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17(3), A Morgan Stanley Publication.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006), "Guidance Paper on Risk Transfer, Disclosure and Analysis of Finite Reinsurance".

ICP 13(Insurance Core Principles No.13), Reinsurance and Other Forms of Risk Transfer, IAIS.

SFAS 113(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13),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Reinsurance of Short-Duration and Long-Duration Contract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2011), "United States v. Ferguson".

Vendetti, P. A. and Freihaut, D. W. (2008), "Actuarial Details of Risk Transfer Come the Forefront", Pinnacle, June 2008, Actuarial Resources, Inc.